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40
- 나. 제안자: 이민석 의원 외 9명
- 다. 제안일자: 2021년 11월 19일(금)
- 라. 회부일자: 2021년 11월 22일(월)

### 2. 제출사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상위법 근거 정비(안 제1조)
- 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특정 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제한하므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안 제2조)
- 다. 사실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신설(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담배사업법」
-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 2021. 11. 19.~ 11. 24.(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기관 또는 단체 선정시 경쟁제한적 규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관련 조문을 개선 하며 아울러, 사실조사 기관(단체) 선정기준 항목을 신설하고자 2021년 11월 19일 이민석 의원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것임.
-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제7조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 안 제3조 (정의)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있음. 이는 종전의 규정이 여타의 전문적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를 제한 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 바 부당한 규제조항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 5조를 신설하여 사실조사 단체 선정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 안 제7조에서는 사실조사 처리시의 의무조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드러나게 함.

- 이와 같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안 제2조에서 특정 단체를 사실조사 수행기관 및 단체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을 가로막게 되어 이는 과도한 규제이며 차별적인 조항이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조문을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시정할 것을 권유한 바 있음.
  
- 아울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조항중 그 뜻이 모호한 부분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있고, 사실조사 기관(단체)의 선정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붙임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 소매업 관련 현황

담배 소매인 사실조사 위탁단체	예산 사용 유·무	관내 담배소매인 업체 수 (2021.11. 현재)
(사)한국담배판매인회 마포조합	비예산	754개소

## 【참고자료 2】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2018. 12.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